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3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7일 정성국위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주거지역 등 특정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고시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6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신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 [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제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3. 「<u>도서관법</u>」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u>초·중등교육법</u>」 제2조 및 「<u>고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동소음 규제지역 외에 이동소음원에 따른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5. 제24조제1항·제2항----- -----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¹⁾

- 1)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소음 측정) 제2조에 따른 배기소음 측정은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로, 2024년 12월 기준 전국 103개 지역에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지정되었고, 확성기 사용 이동행상 등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3,153건이 단속되었음.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4.12.31.기준)

구 분	지역별 이동소음 규제지역지정	구 분	지역별 이동소음 규제지역지정
합 계	103	경 기	12
서 울	25	강 원	6
부 산	16	충 북	1
대 구	8	충 남	1
인 천	8	전 북	5
광 주	1	전 남	-
대 전	5	경 북	3
울 산	5	경 남	7
세 종	-	세 주	-

[이동소음 단속실적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단속건수	조 치 내 역	
		행정지도	과태료처분
계	3,153	3,141	12
확 성 기	686	686	-
음향기계 및 기구	307	307	-
이 룰 차	2,160	2,148	12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관리 : 각 자치단체 별로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 인식에 차이가 있어 소음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필요한 주거지역, 도서관, 종합병원, 학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게 하여 지자체별 소음 정책의 의지에 따른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소음 규제 실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이동소음 규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부여할 경우,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책임 있는 이동소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앙정부가 개별 지역의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직접 지정할 경우 지역의 특수성·주민 의견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다수 지자체²⁾ 또한 지역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정은 행정 혼선과 과잉 규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 의사를 제출하였음.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0여개 지자체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직접 지정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 소음 단속, 민원 대응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워 소음 관리 정책이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주거지역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즉각적인 민원대응이 곤란하고, 법률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회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하도록, 그 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계 지역을 넘나드는 이륜차 운행 단속시 행정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앙 정부의 현장 대응 등 즉각적인 관리의 어려움, 지자체에서의 책임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